

제 호

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서

1. 의료기관의 명칭 :
2. 소재지 :
3. 의료기관장 또는 개설자 :
4. 지정받은 사항 : (외부 지정심사위원회 활용 또는 자체 심사위원회 설치 또는
자체 심사위원회 및 지정심사위원회 설치)

「의료기기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
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직인

